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52
----------	------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30일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1명)
찬 성 자 : 박진형·박중화·김경자(양천)·
김용석(서초)·유 용·김제리·
황준환·우형찬·최관술·김인호·
최영수 의원(11명)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

2. 주요골자

가.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 함. (안 제8조)

나. 위원의 위촉 해제의 규정을 신설 함. (안 제8조의2)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함. (안 제15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고”를 “선출하고”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5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2.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제1항제1호 중 “1회”를 “한 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 중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하고</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 6. (생략)</p> <p>제8조(위원의 임기) <u>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신 설></u></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u>1회</u>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2. (생략)</p> <p>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u>개의하고</u>, 출석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생략)</p> <p>제15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u>」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선출하고</u>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의 임기) <u>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5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u>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u></p> <p>1. <u>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u></p> <p>2. <u>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p> <p>3. <u>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u></p> <p>4. <u>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u></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p> <p>1. ----- <u>한 번</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u>시작하고</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2조제2항-----</p>

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의견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생략)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견 청취) -----

----- 마련하여 -----
-----.

제20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마련하여야 -----.

③ (현행과 같음)